

공중위생관리법

(숙박 · 목욕장업)

목 차

1. **공중위생관리법 개요**
2. **시설,설비기준**
3. **수질검사 기준 및 방법**
4. **영업자 준수사항**
5. **행정처분**
6. **기타관련법**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법제1조]

◆ 목 적

- ▶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 ▶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과
- ▶ 위생수준 향상으로
- ▶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 정책의 추진전략

- ▶ 상생발전 위주의 합리적인 규제
- ▶ 다중이용업소 안전 · 위생관리
- ▶ 소비자 요구에 발맞춘 현실적 서비스 제공

공중위생관리법령 구성

- **공중위생관리법[2020.3.24, 법률 제17091호]**
 - 전문23조와 부칙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2020.3.24, 대통령령제30545호]**
 - 전문11조와 부칙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19.12.31, 보건복지부령 제700호]
 - 전문25조와 부칙

공중위생관리법의 연혁 1

- 1962년 공중목욕장업, 숙박업법, 이용사 및 미용사법을 제정하여 개별 법으로 관리
- 1986년 공중목욕장업, 숙박업등 4개의 공중위생관계 법률을 흡수·통합, 자유업이던 세탁업등 3개의 공중 위생영업을 신고업종으로 추가

공중위생관리법의 연혁 2

- 1999년 공중위생업의 자율경쟁체제와 경영마인드 함양, 규제개혁 차원에서 공중위생법 폐지, 공중위생관리법 제정
- 2005년 10월 목욕장업에 찜질 서비스를 편입
- 2012년 1월 숙박업에 객실 내 취사시설 등 편의시설을 편입하여 숙박업(생활)로 분리

최근 개정된 법령내용 1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1조(과태료부과기준)>

- 법 제4조2항(목욕업 수질기준) 위반 :
기존 100만원 → 변경 150만원
 - 제9조(관계공무원 출입검사거부) · 10조(개선명령) 위반 :
기존 100만원 → 변경 150만원
 - 법 제4조제7항(시설 및 위생, 안전) 위반 :
기존 50만원 → 변경 90만원
 - 법 제17조제1항(위생교육) 위반 : 기존 20만원 → 변경 60만원
- [시행일 2019 10. 8]

최근 개정된 법령내용 2

< 공중위생관리법 >

- 법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금지) :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

최근 개정된 법령내용 3

○ 법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에 제5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위생영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 6.12]

최근 개정된 법령내용 4

-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2[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등을
명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6.12]

최근 개정된 법령내용 5

- 법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시행일 2019. 6. 12.]

최근 개정된 법령내용 6

○ 시행규칙 개정 (개정일 2018. 12. 31)

- 제2조 시설 및 설비기준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욕조수가 여과기에 들어가기 직전의 위치에 자동유입기로 하는 소독·살균장치 설치

- 시행규칙 제4조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 방법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 수질기준

- 시행규칙 제7조 위생관리기준

: 객실, 욕실등 청소대상에 적합한 청소도구 사용

- 시행규칙 제19조 기준 행정처분기준

: 법 11조 개정에 따른 처분기준

공중위생영업 용어의 정의(법제2조)

- **공중위생영업**이란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이 있음
- **숙박업**이란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
 - 취사 시설 제외되는 일반숙박업과 취사시설 포함하는 생활숙박업으로 세분화 됨
- **목욕장업**이란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
 - 맥반석 · 황토 ·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이용업**이란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이란 : 손님의 얼굴 · 머리 ·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 · 분장미용업, 종합미용업으로 세분화 됨
- **세탁업**이란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
- **건물위생관리업**이란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

시설 및 설비기준(시행규칙 제2조)(개정 2019.12.31)

○ 일반 기준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 개별 시설기준

▶ 숙박업

1.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숙박업(생활)은 객실 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 가능.

시설 및 설비기준(시행규칙 제2조)

▶ 목욕장업

1. 욕실 · 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2. 발한실 내에 발열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발한실, 편의시설 [이 · 미용업소, 매점, 헬스클럽장, 음식점 등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 (화장실은 제외)] 및 휴식실 (수면실 등 휴식을 도모하기위한 시설) 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고, 밀실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5. 목욕실 · 발한실 · 탈의실 · 편의시설 및 휴식실을 설치할 경우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6.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욕조수가 여과기에 들어가기 직전의 위치에 자동유입기로 하는 염소 소독장치, 오존장치 또는 자외선 살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7. 목욕실 · 발한실 ·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 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공중위생영업의 [변경]신고[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 4]

○ 공중위생영업의 신규신고[규칙 제3조]

- 신고처 : 구,군 위생업무 관련 과[課]
-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영업 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
- 시설은 독립된 장소로 타 용도의 시설과는 분리, 영업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 확보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목욕장업 해당]

- 일반 목욕장업 중 맥반석, 돌을 가열,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명이상
- 찜질방 형태의 목욕장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특별법 」

공중위생영업의 [변경]신고[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 4]

○ 공중위생영업의 변경신고[규칙 제3조의2]

- 변경신고 사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기존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1/30이상 증·감
-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 숙박업 업종간 변경(일반·생활숙박)

- 신고처 : 구,군 위생업무 관련 과(課)

※ 신고방법(서류)

- 변경신고서,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지위승계신고 제출서류 간소화(17.7.28시행)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삭제 ★

공중위생영업의 [변경]신고[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 4]

○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규칙 제3조의3]

- 신고기간 :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신고서 제출 : 영업 신고증, 신분증 지참
 - ※ 영업정지 기간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음
-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 가능(정보통신망 연계)
 - ※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 시 행정청 직권말소 신설 <2016.8.4 시행>

공중위생영업의(변경)신고[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 4]

○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규칙 제3조의4]

<지위승계신고 대상>

- 영업 양도시 양수인, 영업자 사망시 상속인
- 법인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 신고기간 : 승계 후 1개월 이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서류>

- 영업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삭제 복지부령 제508로 2017.7.28시행]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욕수의 수질기준(시행규칙 제4조)

○ 목욕장업의 수질기준

▶ 원수

- 색도는 5도 이하
- 탁도는 1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 수소이온농도 5.8이상 8.6 이하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mg/ℓ 이하
- 총 대장균 100ml 중에서 미검출

▶ 욕조수 :

- 탁도 1.6NTU 이하(단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받은 제품을 첨가한 때에는 당해제품에서 발생한 탁도는 제외)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25mg/ℓ 이하
- 대장균은 1ml 중에서 1개를 초과하지 못함(2017.12.12시행)

욕수의 수질기준(시행규칙 제4조)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의 기준

- 1) 염소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균총형성단위, colony forming unit)/L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 2)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L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유리잔류염소(遊離殘留鹽素) 농도는 0.2mg/L 이상 0.4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욕수의 수질기준(시행규칙 제4조)

▶ 해수를 욕수로 하는 경우

화학적 산화소요구량 (COD) (mg/ l)		수소이온농도 (PH)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수/100ml)
원 수	욕조수		
2 이하	4 이하	7.8 ~ 8.3	1,000이하

수질검사 방법 등(시행규칙 제4조)

○ 목욕장업의 수질기준

▶ 원수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의함. 다만 욕조수의 대장균군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총대장균군-평판진락법에 따른다.

▶ 욕조수

- 대장균군 또는 레지오넬라균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채수방법 :

욕조의 대각선(대각선이 없는 경우 욕조의 양쪽 끝간의 거리가 긴 지점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욕수를 3등분하여 물의 표면에서 같은 양의 욕수를 채수하되, 균일하게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사용한다.

수질검사 방법 등(시행규칙 제4조)

- 목욕물의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 **이화학시험용** 1개의 용기에 2ℓ 이상을 채취하여야 한다
 - **대장균군시험용**은 멸균된 100ml이상의 용기에 채취하되, 채취된 시료는 섭씨 10℃ 이하의 저온으로 유지하여 6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의 검사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 1개의 용기에 욕조수의 **레지오넬라균**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1ℓ 이상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사기관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 욕조수의 레지오넬라균 검사 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정하여 공고한 「환경 중 레지오넬라 표본분석법」에 따른다.
 -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농도** 검사는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도구의 사용방법에 알맞은 방법으로 검사한다.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 준수사항(시행규칙 제7조)

○ 숙박업자

1. 객실 · 침구 등의 청결

- 객실 · 접객대 · 로비시설 · 복도 · 계단 · 욕실 · 샤워시설 · 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요 · 이불 · 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하여야 한다.
-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 · 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 음용수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 객실 · 욕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청소하고, 청소할 때에는 그에 **적합한 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 준수사항(시행규칙 제7조)

2. 욕실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

- 원수는 원수 수질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수조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독·청소 하여야 한다.

3. 환기 및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럭스(Lux)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럭스(복도·계단의 경우 심야에서 10럭스)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 준수사항(시행규칙 제7조)

4. 그 밖의 준수사항

- 숙박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 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 준수사항(시행규칙 제7조)

○ 목욕장업자

1. 목욕실 등의 청결및 수질관리

- 목욕실은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1회 이상 소독 실시
- 탈의실 · 옷장 · 목욕실 · 발한실 · 물통 · 깔판 · 휴게실 · 휴식실 · 현관 및 화장실 등은 **매일 1회 이상**, 배수시설과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 수건 · 가운 및 대여복은 반드시 세탁한 것을 손님에게 제공
- 빗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과 사용한 것을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 사용한 빗은 소독하여야 한다.
- 부대설비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을 하여야 한다.
- 욕수는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 다만 수돗물인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않을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 준수사항(시행규칙 제7조)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욕조수의 온도 및 유리잔소염소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욕조수를 전부 교체한 경우에는 그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욕조수 교체사실만 기록 할 수 있다.
 - **매년 1회 이상 해당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해야 한다.
- 욕조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목욕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수조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소독·청소 하여야 한다.
-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작성 보급되는 식품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음용수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 준수사항(시행규칙 제7조)

2.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

- 발한실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 발한실 안과 밖(입구 등)에 입욕 주의사항 등 보기쉽게 게시
 -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미만 또는 전신쇠약증세의 어린이
 -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인 사람
 -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 홍조증 환자
 - 노약자 · 임산부 · 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환자
 -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사람
 - 출혈을 많이 한 사람

3. 조명 및 환기

- 발한실 · 휴게실 · 탈의실 · 접객대 · 복도 · 계단 · 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75Lux이상 유지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 준수사항(시행규칙 제7조)

- 휴식실 · 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Lux이상 유지
- 목욕실 · 편의시설 · 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에 맞는 환풍 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용 창을 설치 하여야 함.

4. 그 밖의 준수사항

-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감염병 환자로 인정 되는 자(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 제외)
 - 다른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 곤란한 자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 준수사항(시행규칙 제7조)

- 목욕실 · 탈의실에는 **만 4세(48개월)**이상 남녀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은 남자, 여자 목욕탕은 여자에 한하여 종사 (단, 영업시간외에 목욕장 청소, 유지, 보수를 하는 경우 제외)
-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행위를 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영업소 안에 목욕업신고증, 접객대에 목욕 요금표 게시
- 남녀공용 발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한복을 착용한 뒤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 준수사항(시행규칙 제7조)

-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을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시적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대형타월 및 베개등은 비치 가능.
-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짚질방) 영업 중 24시간 영업하는 경우 오후 10:00부터 오전 5:00까지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법 제9조의2(영업의제한)에 따라 정하는 시간에는 청소년 출입 제한함.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소속학교 교원 또는 그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 제외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 준수사항[시행규칙 제7조]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 출입 사유 및 출입 허용 일시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청소년과의 관계) 및 서명
 - 영업자의 확인 여부
- 영업소의 표시는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중위생영업소 출입 · 검사 등(시행규칙 제16조)

○ 공중위생영업소 출입 지도 · 점검

<공중위생감시원(공무원)>

- 시설 및 설비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지도
점검 및 민원처리 등

<명예공중위생감시원(시민단체 등)>

-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 · 계몽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특별사법경찰(시 · 도 민생사법 경찰과)>

- 공중위생관리 특별단속, 기획단속 등

※ 경찰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

공중위생영업소 출입·검사 등(시행규칙 제16조)

○ 보고 및 출입검사 [법제 9조]

-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유자 등에 대해 필요한 보고하게 할 수 있음
- 소속 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 위생관리업무 이행 및 위생 관리 실태 검사
- 공중위생영업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음

○ 위생교육 [법제17조]

- 기존 영업자 : 매년 3시간 교육 이수
- 교육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법규, 소양교육(친절·청결 포함), 기술교육. 그밖에 공중위생에 필요한 내용
- 신규 영업자는 사전 교육이 원칙이고, 사후 교육은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내(천재지변, 질병, 사고, 국외출장 시)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법 제11조의3)

-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법 제11조 제 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한다.
- 법 제11조 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는 진행중인 행정제재 처분 절차는 양수인에 속행할 수 있다
- ※ 법 제11조 1항 위반 : 공중위생관리법 외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청소년보호법」
 -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법 제13조)

- 추진목적
 -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평가기관 : 구. 군
 - 평가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업소
 - 평가주기 : 격년(2년)
 - 짝수 해 :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 홀수 해 : 이용업, 미용업(일반, 피부, 네일, 화장·분장, 종합)
 -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 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 ※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경우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수 있다.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법 제13조)

○ 평가항목

- 준수사항·권장사항으로 구분, 준수사항은 법에 규정된 사항, 권장사항은 서비스 관련 사항으로 구성

○ 등급평가결과

- 최우수 업소 : 녹색등급 [90점 이상]
- 우수업소 : 황색등급 [80-90점 미만]
- 일반관리업소 : 백색등급 [80점 미만]
- 영업소 별 해당 등급표 송부, 우수업소 표지판제작 지원, 홈페이지 게재 · 홍보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19조)

■ 일반기준

- 2회 이상의 위반행위 적발
 -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frac{1}{2}$ 를 가산
-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반복하여 동일사항 위반
 - 위반회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frac{1}{2}$ 씩 더하여 처분
- 위반행위 차수 적용기준은 최근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과 처분후의 재 적발 일을 기준으로 함
-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함

■ 숙박업 개별 기준(1)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1/3이상을 변경한 경우 	개선명령 / 영업정지15일 / 영업정지 1월 /폐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자 지위승계를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개선명령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 1월 /폐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침구 등의 불청결과 욕실등의 위생 관리 미준수 - 환기 또는 조명 불량 - 업소내 숙박업 신고증, 숙박요금표 미게시 및 요금 미준수 	개선명령(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10일 / 폐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구청장이 하도록 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기피·거부한 때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폐쇄

■ 숙박업 개별 기준(2)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 	<p>영업정지 3월 / 폐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등을 대여,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와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p>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폐쇄</p>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 제외 (2020년도 청소년 /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목욕장업 개별 기준(1)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자 지위 승계를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숙박을 목적으로 침구류 등을 비치한 때 	<p>개선명령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 1월/ 폐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 불 이행한 때 - 22:00부터 05:00까지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p>경고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 1월 / 폐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욕장·탈의실·발한실에 이성의 종사자를 둔 때 - 손님에게 도박 또는 그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때 -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p>영업정지1월 / 영업정지2월 / 폐쇄</p>

■ 목욕장업 개별 기준(2)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구청장이 하도록 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기피·거부한 때 	<p style="text-align: center;">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20일 / 영업정지 1월 / 폐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 행위 또는 음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 	<p style="text-align: center;">영업정지 3월 / 폐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소를 이전한 경우 - 목욕장·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둔 때 -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p style="text-align: center;">영업장 폐쇄</p>

■ 목욕장업 개별 기준(3)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위반한 때 -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거나 진열·보관 한때 - 신고 않고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1/3이상 변경 한 때 	<p>개선명령 / 영업정지15일 / 영업정지 1월 / 폐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욕실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 - 발한실의 안전관리를 하지 아니한 때, 조명 기준 미준수 -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자·정신질환자·음주 등으로 목욕장을 정상적으로 이용이 곤란한 자를 출입시킨 경우 	<p>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10일 / 폐쇄</p>

■ 목욕장업 개별 기준(4)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욕실 및 탈의실에 만4세 이상 남녀를 함께 입장시킨 때 - 목욕장업 신고증 및 목욕 요금표를 게시 하지 아니한 때 	<p>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10일 / 폐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욕수를 유지 하지 아니한 때 	<p>개선명령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5일 / 폐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된 명칭및 영업의 종류 표시외에 다른 업종으로 오인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때 	<p>개선명령 / 영업정지 1 월 / 영업정지 3월 / 폐쇄</p>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2조, 시행령 제11조)

■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동기 등에 따라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경감·가중

■ 개별기준 (2019. 10. 8 개정)

위 반 행 위	과 태 료
- 법 제4조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목욕물중 원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 한 자로서 법 제 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0만원
- 법 제4조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목욕물중 욕조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 한 자로서 법 제 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2조, 시행령 제11조)

■ 개별기준 (2019. 10. 8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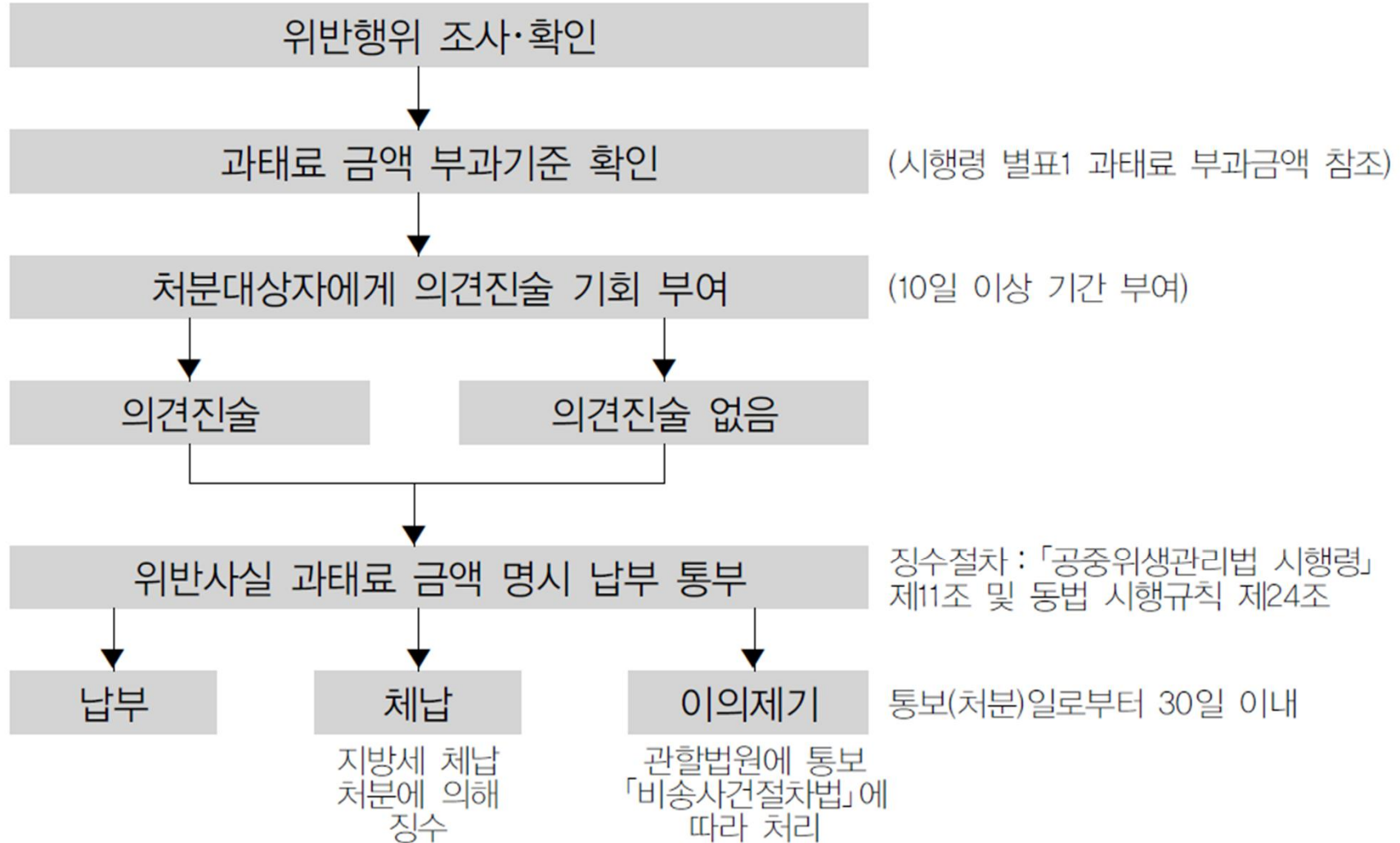
위 반 행 위	과 태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10조에 따른 영업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 위생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 지도 및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150만원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2조, 시행령 제11조)

■ 개별기준 (2019. 10. 8 개정)

위 반 행 위	과 태 료
- 법 제4조 제7항을 위반하여 숙박업소,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90만원
- 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0만원

◆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 ◆



기타 관련법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

- ①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③ 법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세대를 말한다.

④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신설 2014. 3. 18.>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개정 2020. 4. 3.>

오염물질 항목	미세 먼지 (PM-10) ($\mu\text{g}/\text{m}^3$)	미세 먼지 (PM-25) ($\mu\text{g}/\text{m}^3$)	이산화 탄소 (ppm)	폼알데 하이드 ($\mu\text{g}/\text{m}^3$)	총부유 세균 (CFU/ m^3)	일산화 탄소 (ppm)
다중이용시설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 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비 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양이 $200\mu\text{g}/\text{m}^3$ 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 라. 화장실용 배기관
 - 마. 조리용 배기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 <개정 2020. 4. 3. 시행 2020. 4. 3>

오염물질 항목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m ³)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μg/m ³)	곰팡이 (CFU/m ³)
다중이용시설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1, 2019.12.20개정)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총 대장균군은 100mL(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 실시하는 총 대장균군의 수질검사 시료(試料) 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 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라.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마.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바.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1, 2019.12.20개정)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 가. 납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불소는 1.5mg/L(샘물·먹는샘물 및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의 경우에는 2.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비소는 0.01mg/L(샘물·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라. 셀레늄은 0.01mg/L(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수은은 0.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시안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사. 크롬은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아. 암모니아성 질소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질산성 질소는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카드뮴은 0.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붕소는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타. 브롬산염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수돗물, 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오존으로 살균·소독 또는 세척 등을 하여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만 적용한다)
- 파. 스트론튬은 4mg/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하. 우라늄은 30 μ g/L를 넘지 않을 것[수돗물(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을 말한다), 샘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1, 2019.12.20개정)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 가. 페놀은 0.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다이아지논은 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파라티온은 0.06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라. 페니트로티온은 0.04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카바릴은 0.07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사.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아.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디클로로메탄은 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벤젠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톨루엔은 0.7mg/L를 넘지 아니할 것
- 타. 에틸벤젠은 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파. 크실렌은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하.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거. 사염화탄소는 0.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0.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더. 1,4-다이옥산은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1, 2019.12.20개정)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샘물·먹는샘물·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는 4.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트리할로메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클로로포름은 0.08mg/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9mg/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04mg/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및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는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포름알데히드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1, 2019.12.20개정)

5. 심미적(審美的)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 가. 경도(硬度)는 1,000mg/L(수돗물의 경우 300mg/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다만, 맛의 경우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라. 동은 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사.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pH 4.5 이상 pH 9.5 이하이어야 한다.
- 아. 아연은 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염소이온은 250mg/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1, 2019.12.20개정)

- 차. 증발잔류물은 수돗물의 경우에는 500mg/L ,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mg/L 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철은 0.3mg/L 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타. 망간은 0.3mg/L (수돗물의 경우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파. 탁도는 1NTU (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를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 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하. 황산이온은 200mg/L 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은 250mg/L 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거. 알루미늄은 0.2mg/L 를 넘지 아니할 것

6. 방사능에 관한 기준(염지하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가. 세슘(Cs-137)은 4.0mBq/L 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스트론튬(Sr-90)은 3.0mBq/L 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삼중수소는 6.0Bq/L 를 넘지 아니할 것

■ 청소년 보호법

○ 목적

-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 제외
[2020년도 /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주요 내용

-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 청소년 이성혼숙 등 풍기문란 행위[장소제공] 금지
- 행정처분 : 영업정지 2월 →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목적

-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금지사항]
- 성매매 알선행위, 음란행위 및 알선 제공행위, 음란비디오물 등
관람행위, 도박행위

○ 행정처분

- 음란비디오물 관람, 성매매 알선 및 음란행위 알선 :
영업정지 2월 →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도박행위 장소제공 :
영업정지 1월 →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정의

-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여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

○ 금지 행위

-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 처벌내용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 행정처분 : 영업정지 2월 →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록) 레지오넬라(3급 감염병) 예방

○ 개요

- 레지오넬라균속 (*Legionella* spp.)에 의한 감염증
- 레지오넬라 폐렴과 폰티악열(독감형)이 있으며 레지오넬라 폐렴은 심각한 감염증을 나타내고, 폰티악열(독감형)의 경우 경미한 증상을 나타냄

○ 원인

- 레지오넬라균 *Legionella* species
- 전파경로 :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에어컨디셔너, 샤워기, 중증 호흡 치료기기, 수도꼭지, 장식분수, 분무기 등의 오염된 물(냉각탑 수 등) 속의 균이 비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전파됨

부록) 레지오넬라 예방

○ 증상

- 폰티악열

- 잠복기 : 5시간~65시간
- 평균 36시간 2일~5일간 지속되는 급성 질환으로 권태감,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시작하여 갑자기 발열 및 오한이 동반되고 마른기침, 콧물, 인두통, 설사,

오심,

어지러움 등을 보임

- 레지오넬라 폐렴

- 잠복기 : 2일~10일만성폐질환자
- 흡연자, 면역저하환자 등에서 호발함
- 발열, 오한, 마른기침이나 소량의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 근육통, 두통, 전신 쇠약감, 식욕부진, 위장관 증상, 의식장애 등을 보임

부록) 레지오넬라 예방

○ 진단

- 검체(호흡기 분비물, 폐조직, 흉수, 혈액 등)에서 레지오넬라균 분리
-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항체가가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에서 4배 이상 증가
- 소변 내 레지오넬라균 항원 검출

○ 치료

- 폰티악열 : 증상을 약화시키는 치료
- 레지오넬라 폐렴 : 항생제 치료

○ 예방

-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 : 냉각탑 청소 및 소독 [연 2~4회]
- 병원 내 레지오넬라증 예방 : 호흡기에 사용되는 기구나 물은 소독하여 사용하고 온수 탱크, 배관시설 등 원내 환경수를 주기적으로 검사 및 관리

부록) 레지오넬라 예방

- 신고 범위 및 시기
 - 환자, 의사환자를 24시간이내 신고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레지오넬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레지오넬라증이 의심되며, 진단을 위한 추정 진단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국내 현황
 - 2000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2001명 2명이 신고된 이후 2005년까지 10명 이내로 신고되다가, 2016년 이후 100명 이상의 환자가 신고되고 있음.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www.cdc.go.kr)



수고하셨습니다